교권보호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권보호]

교권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이므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대상에 따라 다양한 예방교육을 하고 있으며, 학생의 보호자 등은 교원의 생활지도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하고 그 외에도 민 · 형사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특별휴가 및 전보를 신청하여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 기간동안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긴급경호 및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으로 피해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권보호 1
1. 교권보호 알아보기 4
1.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해 4
1.1.1.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4
2.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7
2.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7
2.1.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7
2.1.2. 학생의 보호자 등의 생활지도관련 의무 준수 8
2.2.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9
2.2.1.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조치 9
2.2.2.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조치 12
2.2.3. 민·형사상 조치 15
3. 피해교원 보호 및 지원 17
3.1.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17
3.1.1. 특별휴가 및 전보 신청 17
3.2.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18
3.2.1.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18
3.2.2.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20
3.2.3. 긴급경호 및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21

1. 교권보호 알아보기

1.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해

1.1.1.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참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요건

▪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의한 행위일 것

▹ “보호자 등”이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참조).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일 것

▹ “교육활동”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와 관련된 활동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 “교원”이란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교사 및 이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참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

Q. 교육활동 중인 강사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침해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A. 현행 법령상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강사 등은 「교원지위법」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와 보호조치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학생 조치와 피해지원은 교원에 준하여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3쪽 참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일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여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호).

√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여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호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의무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8조제2항).

▪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8조제3항).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누구든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8조제4항).

> ※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신고·상담 등이 가능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2.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2.1.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제1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제2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교육대상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제4항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대상	교육내용
교직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생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교육자료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forteacher.kedi.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2. 학생의 보호자 등의 생활지도관련 의무 준수

학생의 보호자 등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보호자의 의무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 학생의 보호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6제2항).
-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6제3항).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및 보호자의 의무

-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전단).
  - 학업
  - 보건 및 안전
  - 인성 및 대인관계
  - 그 밖에 유아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후단).
- 보호자는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제21조의4제2항).
-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제21조의4제3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및 아동학대의 예외

-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 및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래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 및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2항).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단서).

※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 교육감은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단서).

민원처리는 교장·원장이 책임지며,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담 등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교장 및 원장의 임무

▪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

▪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합니다(「유아교육법」 제21조제1항).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상담

▪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

▪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제4항).

▪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제5항).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상담 중단 및 거부

▪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상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제6항).

▹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제7항 전단).

▹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제7항 후단).

2.2.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2.2.1.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조치

학생에게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대응합니다.

※ 아래 절차는 교육부에서 발간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forteacher.kedi.re.kr)에서 제공하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발생 시 단계별 처리방안

1. 초기 대응 및 피해교원 보호(학교)	
피해교원 대응	침해행위 중단 요청 주변에 도움 요청 및 현장에서 벗어나기 관리자 또는 담당자에게 신고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심리 상담 등 지원 요청
업무담당자 대응	인지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교권 회복 조치 개입 관련자와 피해교원 일시 분리, 목격학생 안정 등 교육현장 안정화 필요시 침해행위 관련 증거자료 및 목격자 확보 침해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 관할청에 사안 신고 보고(사안 접수 후 24시간 이내 학교 → 교육지원청) 사안신고서 안내 및 접수(피해교원 → 학교) 범죄행위의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 언론 등 대응창구 단일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2. 사안발생 보고(학교)	
피해교원 대응	특별휴가, 조퇴, 병가 등 신청 부상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요청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및 진술
업무담당자 대응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 사안 파악 및 사안발생 보고
3. 사안 조사(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대응	추가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업무담당자 대응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및 확인 중대사안 발생보고(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 교육부) 사안 조사 피해교원 및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의 관련 자료 조사 쟁점사안 확인·점검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확인·점검 조치 필요성에 관한 사실 확인·점검 조사보고서 작성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운영(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대응	사실관계 진술(서면진술 가능)
업무담당자 대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안건 상정 당사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분쟁조정(희망시) 침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의결 피해교원 추가 보호조치 권고 회의록 작성
5. 사안 종결(학교, 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대응	피해 회복 및 치유
업무담당자 대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14일 이내, 주말·공휴일 포함) 결과보고(교육지원청 → 시·도 교육청)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 독려 피해교원 심리치료 등 지원 재발방지조치 및 추수지도 불복절차 안내·지원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교내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 조치를 받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

- 1호: 학교에서의 봉사
- 2호: 사회봉사
- 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4호: 출석정지
- 5호: 학급교체
- 6호: 전학
- 7호: 퇴학처분(중학교 3학년까지의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 교육장은 위의 1호 및 2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4항).

▪ 교육장은 위의 4호부터 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며, 6호에 따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3항).

▪ 교육장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해야 하며,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5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위의 1호, 3호부터 5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9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위의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11항).

이의 신청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위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6항).

▪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14항).

> ※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2.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조치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대응합니다.

> ※ 아래 절차는 교육부에서 발간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forteacher.kedi.re.kr)에서 제공하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발생 시 단계별 처리방안

1. 초기 대응 및 피해교원 보호(학교)	
피해교원 대응	▪침해행위 중단 요청 ▪주변에 도움 요청 및 현장에서 벗어나기 ▪관리자 또는 담당자에게 신고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심리 상담 등 지원 요청
업무담당자 대응	▪인지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교권 회복 조치 개입 ▪관련자와 피해교원 일시 분리, 목격학생 안정 등 교육현장 안정화 ▪필요시 침해행위 관련 증거자료 및 목격자 확보 ▪침해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 ▪관할청에 사안 신고 보고(사안 접수 후 24시간 이내 학교 → 교육지원청) ▪사안신고서 안내 및 접수(피해교원 → 학교) ▪범죄행위의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 ▪언론 등 대응창구 단일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2. 사안발생 보고(학교)	
피해교원 대응	▪특별휴가, 조퇴, 병가 등 신청 ▪부상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요청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및 진술
업무담당자 대응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 ▪사안 파악 및 사안발생 보고
3. 사안 조사(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대응	▪추가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업무담당자 대응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및 확인 ▪중대사안 발생보고(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 교육부) ▪사안 조사 ▪피해교원 및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의 관련 자료 조사 ▪쟁점사안 확인·점검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확인·점검 ▪조치 필요성에 관한 사실 확인·점검 ▪조사보고서 작성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운영(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대응	▪사실관계 진술(서면진술 가능)
업무담당자 대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안건 상정 ▪당사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분쟁조정(희망시) ▪침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의결 ▪피해교원 추가 보호조치 권고 ▪회의록 작성
5. 사안 종결(학교, 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대응	▪피해 회복 및 치유
업무담당자 대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14일 이내, 주말·공휴일 포함) ▪결과보고(교육지원청 → 시·도 교육청)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 독려 ▪피해교원 심리치료 등 지원 ▪재발방지조치 및 추수지도 ▪불복절차 안내·지원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 등은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조치 기한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4항).

과태료의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5조제1항).

>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3. 민·형사상 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

▪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법」 등 각종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이를 고소하거나, 이를 알고 있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침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4조제1항 및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7쪽 참조).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이 모욕죄 등 친고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고소권자인 피해자 본인이 고소해야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형법」 제312조제1항 및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7쪽 참조).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유효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관할청의 형사고발 조치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또는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

> ※ 형사고소·고발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교원이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발생시킨 상대방을 대상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제1항 및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8쪽 참조).

> ※ 민사소송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장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통고제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 등 각종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소년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교권을 회복하고 해당 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절충적인 방법으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학생에게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 제3항 및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9쪽 참조).

진행 절차

▪ 학교장이 관할 법원에 학생과 보호자의 성명, 주거,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의 내용을 서면(통고서)으로 제출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구술로도 가능합니다(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9쪽 참조).

▪ 원칙적으로는 학생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입니다(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9쪽 참조).

※ 학교장 통고제의 장점

- 학교장 통고제에 따라 소년보호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학생의 장래에 전과로 인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출처: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9쪽 참조 >

3. 피해교원 보호 및 지원

3.1.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3.1.1. 특별휴가 및 전보 신청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즉시 가해자와 분리하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함. 이하 “관할청”이라 함)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함)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의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 심리상담 및 조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아래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조치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전단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후단).

▪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분리조치를 다음에 따라 실시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리조치에 관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할 것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의 기간을 정할 것
- 분리조치에 필요한 별도의 공간을 학교 내에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

특별휴가

▪ 피해교원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3조).

▪ 학교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제1항 본문).

특별휴가 사용 후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

Q. 피해교원이 특별휴가 5일을 사용했습니다. 요양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특별휴가 5일을 사용하고도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공무상 병가를 추가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상 병가 기간이 6일 이내인 경우 학교장이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2쪽 참조>

▪ 단,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법」 제257조부터 제26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때에는 5일의 범위에서 추가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제1항 단서).

피해교원이 희망하는 경우 비정기 전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보 신청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라 전학 조치된 학생과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추후 해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제3호 및 제22조제6항).

※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비정기 전보 관련 규정(서울특별시교육청)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권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것이 우려되는 교사로서 학교장이 전보 내신한 교사는 정기전보 이전에도 전보할 수 있습니다(「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제14조제3항제13호 참조).
- 교내·외에서 학습권 및 교권 보호 등을 위하여 교육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교사로서 학교장이 전보 내신한 교사는 비정기 전보할 수 있습니다(「초등학교 교사 전보 원칙」 제5조제3항제7호 참조).
- 교내·외에서 학습권 및 교권 보호 등을 위하여 교육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교사로서 유치원장이 전보 내신한 교사는 비정기 전보 대상에 해당합니다(「유치원 교사 전보 원칙」 제5조제2항제7호 참조).

※ 위의 비정기 전보 관련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내용이며, 관할 교육청별로 운영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2.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3.2.1.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교원을 위한 법률상담 및 자문을 지원합니다.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제4호).

지원내용

▪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5쪽 참조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forteacher.kedi.re.kr/)—교육활동보호센터 소개—교육활동보호센터 주요 운영 내용)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법률 상담·지원
- 법률 정보 제공
- 법률 상담료 지원 등

> ※ 위의 운영 내용은 시·도교육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관할 교육청 법률지원단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forteacher.kedi.re.kr) 또는 대표전화(☎지역번호+139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소송 비용 및 분쟁조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교원보호공제사업

▪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함)을 운영·관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이 포함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제3호).

※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최소보장범위)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제공하는 법률 관련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한도	예외사유
민·형사 소송비용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적분쟁 발 생 시, 피공제자를 상대로 제기 된 민사, 형사 사건의 소송비용 및 사건처리비용 ※ 가압류가처분신청·소제기·형사 고소/고발은 반복적, 계속적 교육활동 침해행위 배제를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가능	심급별 최대 660만원 검경수사단계 330만원 ※ 항목별로 변호사보수 한도액이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 필요	민사: 고의중과실로 인한 책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 형사: 유죄 확정 시
분쟁조정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사안 발생 시, 변호사 또는 공제회 담 당자 등의 분쟁조정 서비스	한도 없음	소송이 진행 중인 분쟁

표준약관은 시·도교육청의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보장범위이며, 시·도별 여건에 따라 보장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84~85쪽 참조>

3.2.2.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침해행위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합니다.

보호조치 비용의 침해자 부담 원칙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함)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해야 하며, 부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5항 본문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관할청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5항 단서).

▪ 구상권의 범위는 관할청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또는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관할청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으로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수급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구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관할청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관할청은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보호자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을 위해 심리상담 및 치료비 등 지원합니다.

교원 심리상담 및 조언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함)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심리상담 및 조언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제1호).

교육활동보호센터

▪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조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제1항).

▪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5쪽 참조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forteacher.kedi.re.kr/)—교육활동보호센터 소개—교육활동보호센터 주요 운영 내용)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피해교원의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 교육활동 침해 교원, 교직 스트레스 교원, 심리적 소진 교원, 학교 부적응 교원 등에 대한 개인 심리상담 지원
-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오프라인·온라인 운영
- 치유·회복·복귀·성장에 따른 집단상담 지원
- 교원 힐링 프로그램 지원 등

> ※ 위의 운영 내용은 시·도교육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관할 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forteacher.kedi.re.kr) 또는 대표전화(☎지역번호+139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원보호공제사업

-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함)을 운영·관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포함)이 포함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제2호 참조).

※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최소보장범위)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관련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한도	예외사유
상해치료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심리상 담 및 조언 비용	총 300만원 한도 내	동일한 내용의 보호조치 비용에 상당한 비용을 받은 경우
심리상담	소진교원 등 대상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10회 범위 내	

표준약관은 시·도교육청의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보장범위이며, 시·도별 여건에 따라 보장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84쪽 참조>

3.2.3. 긴급경호 및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교원이 교육활동 중 난입, 난동 등으로 위협을 받는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교원보호공제사업

▪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함)을 운영·관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이 포함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제2호 참조).

※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최소보장범위)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제공하는 긴급경호 관련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한도
위협대처 서비스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폭행, 상해 등 중대사안 시 긴급 경호 ※ 신체적 위협이 피공제자의 교육활동과 관련없이 발생한 경우에 도 교육활동 중인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경우 경호서비스 제공	1사고당 20일[2인이 동시 에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경우 1사고당 최대 10 일(2인×10회)] 위협이 지속되거나 재발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최 대 20일까지 연장 가능

표준약관은 시·도교육청의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보장범위이며, 시·도별 여건에 따라 보장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84쪽 참조>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법적 보호를 받으며,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 학교(장) 및 유치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3 및 「유아교육법」 제21조의5).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는 업무용 전화번호와 교사 휴대전화를 매칭하여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지 않고도, 학생 및 학부모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부산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2023. 11. 23.) “부산교육청, 내년 신학기부터 모든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참조].

▪ 업무시간 설정, 안심 발신 서비스, 안심 문자 서비스, 부재중 문자 서비스, 수업 시간·근무 외 시간 중 자동 안내멘트 설정 등을 통해 교사의 사생활,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합니다[부산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2023. 11. 23.) “부산교육청, 내년 신학기부터 모든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참조].

※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는 희망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할 교육청별로 운영 내용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